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36

2023.09.11.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3년 8월 21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2023.9.1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 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경제정책실장 김태균)

가. 제안이유

○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대외 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은 서울시 친선우호도시의 증가 및 국제 교류 수요증가 등 도시외교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존치가 필요하며,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또한 지자체간 우호협력관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존치가 필요함에 따라 기금 존속 기한을 연장 하는 조례 일부개정을 제안함.

나. 주요내용

-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변경
 - 2023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준석)

가. 동의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코로나19 이후 국내・외 지방정부와의 교류가 증가하고 있어 기금의 존속 필요성이 있는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대외협력기금의 존속기한(2023.12.31.)을 5년간 연장(2028.12.31.) 하고자 제출됨.

나. 대외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

○ 서울시는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2005년 부터 「지방자치법」제142조와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외협력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음.

- 동 기금은 일반회계전입금과 이자수입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며,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사업과 재해 구호경비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국제협력계정¹)(이하'국제계정')'과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등을 위한 '국내협력계정²)(이하'국내계정')'으로 구분해 운용되고 있음.
- '국내계정'의 총 조성 규모는 46억 6백만원으로, 2023년 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 10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천만원, 예치금 회수 35억 4천만원, 기타수입 6백만원 등임.

< 2023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

(단위 : 백만원)

	수 입 🧵	계 획			지 출	계 획	
항목	당초(A)	변경(B)	증감(B-A)	항	당초(A)	변경(B)	증감(B-A)
합 계	4,056	4,606	550	합 계	4,056	4,606	550
일반회계 전입금	1,000	1,000	_	비융자성 사업비	2,970	3,181	211
공공예금 이자수입	60	60	_	기본경비	3	3	-
기타수입	0	6	6	예치금	1,083	1,422	339
예치금회수	2,996	3,540	544	(비고)			

○ 이러한 국내계정은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을 비롯한 10개 고유목적사업에 약 31억 8천 1백만원의 지출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8월 현재 55.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바,

¹⁾ 서울시 조직개편(2022년 8월)에 따라 국제협력계정 담당부서인 국제협력과가 시민소통기획관에서 경제정책실로 이관됨.

²⁾ 서울시 행정국 대외협력과 소관

주로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사업을 포함해 재난구호, 자연재해 복구지원 등에 사용되었으며 최근 폐막한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긴급 지원³⁾에도 사용되었음.(참고자료 1)

< 2023년 국내협력계정 사업집행 현황 >

(8월 13일 기준,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합계	3,181	1,766	55.5
1. 서울-타시도간 스토리자유상품 개발운영	150	0	0
2. 청소년 역사문화교류 사업	360	344	95.6
3.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1,000	600	60
4. 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 운영	30	1	3.3
5. 타시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 운영	250	175	70
6. 대학생 지역상생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사업	65	28	43.1
7. 랜선 나눔 캠퍼스	485	104	21.4
8. 울진 산불피해지역 복구지원	500	473	94.6
9. 2030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지원	41	41	100
10. 지역관광 안테나숍 설치·운영	300	0	0

 한편 '국제계정'의 총 조성액은 63억 3천 8백만원으로, 주요 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 15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9천 1백만원, 예치금 회수 47억 3천 8백만원, 기타수입 9백만원 등임.

< 2023년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 >

(단위:백만원)

	수 입	계 획			지 출 .	계 획	
항목	당초(A)	변경(B)	증감(B-A)	항목	당초(A)	변경(B)	증감(B-A)
합 계	6,120	6,338	218	합 계	6,120	6,338	218

^{3) &#}x27;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항목으로 간이화장실 50동 지원

일반회계 전입금	1,500	1,500	_	비용자성 사업비	1,703	3,118	1,415
공공예금 이자수입	91	91	_	기본경비	5	5	0
예치금회수	4,529	4,738	209	예치금	4,412	3,215	△1,197
기타수입	_	9	9	(비고)			

 이러한 국제계정은 자매도시 공무원 대상 석사학위 과정 운영, 외국 지방정부 재해구호 등 8개 고유사업에 31억 1천 8백만원의 지출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8월 현재까지 39.2%를 집행하였는바,

주로 이상기후 등으로 발생한 세계 각 도시에 재해구호, 개도국의 소방안전 인프라 구축, 해외도시와 친선우호 문화교류 사업 등에 사용되었음.(참고자료 1)

< 2023년 국제협력계정 사업집행 현황 >

(8월 13일 기준,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합 계	3,118	1,222	39.2
1. 서울시립대 도시행정 해외공무원 석사과정	905	468	51.7
2. 외국도시 공무원 초청 연수	301	70	23.2
3. 해외철도관계자 초청교육사업	67	5	7.5
4. 개도국 소방안전 인프라 구축	125	111	88.8
5. 외국지방정부 재해구호	425	415	97.6
6. 해외도시 친선우호 문화교류사업	250	151	60.4
7. 서울시 청년해외봉사단 사업	745	2	0.2
8. 유스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300	0	0

 현재까지 국제계정의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모두 세 차례 변경 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23년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내역 >

(단위:백만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획		
구분	당 초		변 경		78	Cr +	변 경		
十正	선 10	1차	2차	3차	구분	당 초	1차	2차	3차
계	6,120	6,329	6,338	6,338	계	6,120	6,329	6,338	6,338
일 반 회 계 전 입 금	1,500	1,500	1,500	1,500	비 융 자 성 사 업 비	1,559	1,639	1,889	2,974
이 자 수 입	91	91	91	91	인 력 운 영 비	144	144	144	144
기 타 수 입	_	_	9	0	기 본 경 비	5	5	5	5
예치금회수	4,529	4,738	4,738	4,738	예 치 금	4,412	4,541	4,300	3,215

- 먼저 금년 2월에 발생한 제1차 변경은 2022년 기금결산 내역을 반영하기 위해 수입계획에 예치금 회수수입 2억 9백만원을 증액하고, 지출계획에 튀르키에 지진 재해구호 사업비 8천만원을 증액함.
- 다음으로 금년 5월에 발생한 제2차 변경은 수입계획에 기금 결산이후 2022년 사업비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 9백만원을 증액하고, 지출계획에 '해외도시 친선우호 문화교류사업' 2억 5천만원을 신설한 것임.4)
- 참고로 '해외도시 친선우호 문화교류사업'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문화공연 및 전시, 튀르키에 공화국(앙카라) 건국 100주년 기념을 세부 사업으로 함.

⁴⁾ 제2차 변경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규모가 20%에 달하지 않아 시의회에 운영계획변경안이 제출되지 않았음.

마지막으로 금년 5월에 발생한 제3차 변경은 지출계획에 예치금 10억 4천 5백만원을 감액하여 '서울시 청년해외봉사단 사업'을 추진 하고자 한 것으로, '서울시 청년해외봉사단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 (KOICA)과 협력하여 서울거주 청년을 아시아·태평양 개발도상국에 파견하여, 교육, 보건의료, 농촌개발 등에 대한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임.

< 서울시 청년해외봉사단 사업 개요 >

ㅇ 추진목표

- 청년에게 국제개발 협력 해외 봉사 경험을 제공하여 자존감 및 국제 감각 함양
- 개발도상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시와의 우호협력 관계 및 상호이해 증진
- 참여자의 경험이 한국사회로 환류되어 사회적기여 생태계를 조성하는 발판 마련
- ㅇ 지원대상 : 만 19세~39세 서울 거주 청년
 - ※ 고립청년·취약청년(저소득층, 장기미취업자 등)·시정기여자 등 정원의 20% 내외 선정 목표
- ㅇ 지원규모 : 서울 거주 청년 50명
- ㅇ 파견기간 : 해외 현지 파견 약 3개월
- ㅇ 파견지역 : 아시아대평양 개발도상국(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라오스, 스리랑카 등)
- ㅇ 지원내용 : 국내 사전 교육 및 발대식(1개월) + 해외봉사(3개월) + 사후관리
 - ※ 해외봉사 활동분야 예시) 프로젝트, 교육, 기후·환경·적정기술, 보건의료·농촌개발, 사회복지·청소년개발, 젠더·인권 등
- ㅇ 총사업비 : 13억원(2023년 1.045백만원. 2024년 255백만원)
 - ※ 대외협력기금 활용. 장기계속계약 추진
- ㅇ 추진절차 : 사업 설계 및 사전절차 이행 예산편성(23.3~23.7), 시범 운영(23.7~24.4)

다. 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적정성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기금운용의 효율화와 무분별한 기금 설치를 제한하기 위해 5년 이내에서 기금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존속 기한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⁵).

⁵⁾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 이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금 존치의 타당성과 필요성, 설치목적의 달성, 사업의 지속성, 재정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기상이변으로 인한 세계 각국의 자연재해 증가로 외국지방 정부 재해구호 협력사업과 개도국 소방안전 인프라 구축사업의 지속 필요성이 있고, 코로나19로 멈췄던 외국지방정부와 협력 및 교류가 재개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태풍과 산사태, 침수 피해 등 자연재해가 증가추세에 있고, 2025 아시아·태평양 잼버리⁶),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 타 지자체와 국제행사 등을 위한 협력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기금의 존속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하겠음.

< 기금 존속기한 연장 연혁 >

의결일	변경 내용	기한
2005.11.04.	국제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	
	대외협력기금으로 조례 명칭 개정	
2014.07.17.	대외협력기금 존속 기한의 도입	2018. 12. 31.만료
	대외협력기금 존속 기한 연장	2023. 12. 31.만료

○ 다만, 계정별 관리주체가 경제정책실(국제계정)과 행정국(국내계정)으로 이원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 조례개정안의 심사는 경제정책실을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⁶⁾ 한국 개최는 확정이나 개최 지역이나 장소는 미정임.

소관하는 기획경위원회에서 일괄 심사하므로 국내계정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동일한 기금이라도 계정이 다른 경우 사실상 서로 다른 기금을 운용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관리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동 기금의 국내계정과 국제계정은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

Ⅵ.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136

제출년월일: 2023년 8월 14일 제 출 자: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은 서울시 친선우호도시의 증가 및 국제교류 수요증가 등 도시외교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존치가 필요하며,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또한 지자체간 우호협력관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존치가 필요함에 따라 기금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조례 일부개정을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변경

- 2023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 (5)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 (2023, 6, 15.~ 2023, 7, 5.) 결과 :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 작성자 : 경제정책실 국제교류과 신현주(☎2133-5294)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존속기한은 <u>2023년 12월 31일</u> 까	2028년 12월 31일
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	
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	
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	
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	
다.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 해당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표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부 개정으로, 수반되는 비용이 없는 바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의거, 미첨부
- 4. 작성자 : 국제교류과 행정6급 신현주